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목 차>

1. 제재처분 의제사유 마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초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김학원
	담당부서 (과)	건설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정경훈		연락처	044-201-3509
	과장	박병석		이메일	khmj4@korea.kr

정책 책임자 직위

건설정책국장

성명 (서명)

정경훈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제재처분 의제사유 마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		
	2.규제조문	○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3.본문		
	3.위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재 행정예고 계획 (12.5-12.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하여 처분실효성 확보 필요(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18.3)		
	7.규제내용	○ 제재처분 의제사유 마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봄.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본문에서는 '국토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1.시정을 명하거나, 2.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 밖의 필요한 지시'에 대해 의제처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규제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한 건설업자		
	9.규제목표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하여, 2년 이내에 동일업종 같은 위반행위 발생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여 실효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적용제외(제7호)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 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하여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필요 [감사원감사 수감결과('18.3) 반영]

※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 가능(건설업 관리규정 제7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본문에서는 “국토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기간을 정하여 1.시정을 명하거나, 2.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게 하는 것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건설업자(시정명령 대상자)	행정예고 예정	

3. 규제목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 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게 하여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목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수단) 처분관청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해소한 경우에도 제재처분 이력을 관리토록 함
- (타당성) 목적 및 수단이 타당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규제 미포함(산업통상자원부 의견, '18.11.30)

- 경쟁영향평가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경쟁과 관련이 없음

- 중기영향평가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설업자 전반(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음)에 걸치는 사항임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2021.2.3.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와는 무관하게 처분관청이 관리하는 것임

○ **규제 차등화 방안**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차등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이력을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님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감사원 감사결과(2018.3)를 반영하는 사항임
- 2018.12월 중 행정예고 계획

2. 향후 평가계획

처분관청에 세부처리방안을 알리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계획

3. 종합결론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도과한 후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 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필요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